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3. 29 선고 2022가단115416 판결 [사해행위 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김정원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혜영

변론 종결2023. 3. 22.

판결 선고2023. 3. 29.

주 문

- ① C과 피고 등이 2021. 12. 15.경 <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> 중 각 2/13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4,230,7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, ② 피고는 원고에게 24,230,76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6. 8. 하순경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2016. 12. 14. 'C은 원고에게 84,057,081원과 그중 55,801,455원에 대하여 2016. 6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'는 승소판결(☞ 이 법원 2016가단135402 판결)을 받았고, 그 판결은 2017. 1. 6.경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2001. 4. 10.부터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(이하 편의상 통틀어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피고의 어머니인 D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, D이 2021. 10. 19.경 사망한 후 D의 남편인 E 과 그들 슬하의 자녀들인 피고와 C 등이 2021. 12. 15.경 상속재산 분할협의(이하 편의상 '이 사건 약정'이라고 한다)를 한 다음, 2021. 12. 16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그 무렵 C은 이른바 '채무 초과상태'였다.

2.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"명의신탁자인 E이 2021. 4. 9.에 명의수탁자인 F에게 처 D에게 경매가격 그대로 매매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하여 D 명의로 등기된 것"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에 나온 사실관계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은 C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(∴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됨)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정당하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, "판결이 확정된 후 시효 중단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바, 별도의 적법한 시효 중단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"되었다고 다투지만, '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,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(기간)는 10년'(민법 제165조 제1항)인데,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,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피고는 다음으로,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할 당시 이른바 '선익의 수익자'였다고 다투지만, 을 1~6, 7-1~7-7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라. 나아가 그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약정을 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책임재산 평가액{~~24~~ 24,230,769원(= 1억 5,750만원 × 2/13)}이, 2022. 4. 5.경까지 이미 발생한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원리금 채권액(142,509,059원,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는 그 액수가 더욱 커졌음)에 크게 미달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적은 금액인 24,230,769원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을 24,230,7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,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24,230,76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그 의무의 이행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.

판사박관근

별지